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11호

2007년 12월 3일 월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72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1-1호선)실시계획
인가 고시 2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7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0호선)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4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7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7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7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8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76호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고시 9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101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10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1038호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백석집단취락지구
소로3-1일원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공고 21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1045호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27

회 람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고	시
---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72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1-1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소로1류1호선, 사업명:승학길 도로정비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6) 및 건설과(560-452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1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1류1호선)
 - 【명칭】 승학길 도로정비공사
3. 사업의 규모 : L = 80m, B = 12m ~ 1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7. 11월 ~ 200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불입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불입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불입과 같음

용 지 조 서

번호	토 지 소 재			현실적 이용상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동 명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잔 여	성 명	주 소	
①	연희동	114-7	도	현행도로	1	1	0	인 천 시		
②	연희동	213-2	도	현행도로	235	㉠ 175	㉡ 60	국 (건설교통부)		
③	연희동	213-3	답	현행도로	2	2	0	인 천 시		
④	연희동	213-5	전	현행도로및 비블하우스 (화원)	978	㉠ 70	㉡ 908	인 희 형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22BL1LT와10필지검단아 이파크@103동302호	근저당 및 지상 권자(서인천농업 협동조합:서곶지 점,율도지점)
⑤	연희동	213-9	도	현행도로	33	33	0	인 천 시		
⑥	연희동	213-11	도	공지	130	㉠ 96	㉡ 34	인 천 시		
⑦	연희동	213-12	도	현행도로	144	㉠ 118	㉡ 26	인 천 시		
⑧	연희동	213-18	도	현행도로	83	83	0	인 천 시		
⑨	연희동	215-2	도	현행도로	278	278	0	국(건설부)		
⑩	연희동	215-9	도	현행도로및 공지	160	160	0	정 흥 구	인천 서구 연희동 235	
⑪	연희동	215-16	도	현행도로및 공지	125	125	0	인 천 시		
⑫	연희동	556-2	도	현행도로	1,511	㉠ 73	㉡ 1,438	국 (건설교통부)		
계					3,680	1,214	2,466			

지 장 물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총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현황	토지 소유자		물건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①	연희동 215-9	회양목	H = 0.5m		약58류음	묘목밭	인천 서구 연희동23 5번지	정흥구	인천 서구 연 희 동 235번지	정흥구		
②	연희동 215-2	전 주			1본	도로						
③	연희동 556-2	전 주			1본	도로						
④	연희동 749	전 주			1본	도로						
⑤	연희동 215-2	체신전주			1본	도로						
계					약58류음 전주3본 체신주1본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7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0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소로3류20호선, 사업명: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6) 및 건설과(560-452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및 토지분할로 인한 편입용지 변경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75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3류20호선)
 - 【명칭】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 = 293m, B = 8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07. 8월 ~ 2008. 2. 20
 - 【변경】 2007. 8월 ~ 2008. 12. 2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불입과 같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 : 불입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 불입과 같음

용 지 조 서(변경)

구분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당초	1	공촌동	산142-2	임	292	59	부평구 부평동 400-21	김옥진				
변경	1	공촌동	산142-7	임	71	71	부평구 부평동 400-21	김옥진				
당초	2	공촌동	산142	임	1,450	353	부평구 부평동 400-21	김옥진				
변경	2	공촌동	산142-5	임	409	409	부평구 부평동 400-21	김옥진				
당초	3	공촌동	219	전	1,486	17	동구 송림동 8-500	문인환				
변경	3	공촌동	219-4	전	17	17	동구 송림동 8-500	문인환				
당초	4	공촌동	283	전	1,243	141	서구 공촌동 250	이용민				
변경	4	공촌동	283-2	전	137	137	서구 공촌동 250	이용민				
당초	5	공촌동	283-1	전	2,341	239	서구 공촌동 250	이용민				
변경	5	공촌동	283-3	전	236	236	서구 공촌동 250	이용민				
당초	6	공촌동	산141-3	임	3,328	450	산림청	국				
변경	6	공촌동	산141-7	임	468	468	산림청	국				
변경	7	공촌동	산141-8	임	2	2	산림청	국				
당초	7	공촌동	282	전	1,499	79	서구 공촌동 250	이철주				
변경	8	공촌동	282-2	전	50	50	서구 공촌동 250	이철주				
변경	9	공촌동	282-3	전	27	27	서구 공촌동 250	이철주				
당초	8	공촌동	278	전	560	399	서구 연희동 11	정용구				
변경	10	공촌동	278-6	전	390	390	서구 연희동 11	정용구				
당초	9	공촌동	278-1	전	701	318	재무부	국				
변경	11	공촌동	278-7	전	343	343	재무부	국				
당초	10	공촌동	산141-6	임	402	27	산림청	국				
변경	12	공촌동	산141-9	임	27	27	산림청	국				
당초	11	공촌동	산140-4	임	472	35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13	공촌동	산140-7	임	27	27	인천광역시 서구					
당초	12	공촌동	275-1	전	2,645	418	서구 공촌동 307-36	이용진				
변경	14	공촌동	275-7	전	418	418	서구 공촌동 307-36	이용진				
당초	13	공촌동	277-1	전	7	7	인천광역시(교육감)	국				
변경	15	공촌동	277-1	전	7	7	인천광역시(교육감)	국				
당초	14	공촌동	275	답	3,833	115	서구 신현동 254 주공a 25동 203호	김영욱 외1				
변경	16	공촌동	275-6	답	117	117	서구 신현동 254 주공a 25동 203호	김영욱 외1				

지장물조사(변경없음)

번호	동명	지번	지장물		소유자		관계인			비고
			종류	수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내용	
1	공촌동	283-1	배나무	109	서구 공촌동 250	이용민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74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사업명 : 민영아파트 건립공사
- 2. 사업주체 : 이앤조이앤씨(주) 대표 나춘오, (주)꿈을짓는사람들 대표 정환
-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서구 오류지구 81블럭 24롯트
 - 나. 대지면적 : 11,654.20㎡
 - 다. 연면적 : 31,954.6774㎡
 - 라. 사업비 : 67,665,988,000원
 - 마. 사업규모 : 지하3층 지상15층 4개동 203세대
- 4. 사업기간 : 2007. 11 ~ 2010. 12. 1
-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변경사항 없음 ”
- 6. 변경사항
사업비변경(64,167,770천원 ⇒ 67,665,988천원)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7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사업명 : 민영아파트 건립공사
- 2. 사업주체 : 이앤조이앤씨(주) 대표 나춘오, (주)꿈을짓는사람들 대표 정환
-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서구 오류지구 80블럭
 - 나. 대지면적 : 48,332.80㎡
 - 다. 연면적 : 129,717.9322㎡
 - 라. 사업비 : 291,729,458,000원
 - 마.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12개동 731세대
- 4. 사업기간 : 2007.11 ~ 2010.12.1
-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변경사항 없음 ”
- 6. 변경사항
사업비변경(280,764,275천원 ⇒ 291,729,458천원)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76호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석남동 석남주공1단지재건축아파트 건립공사
- 2. 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2번지 외2필지
- 3. 사업시행자 : 석남주공1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 방일만(석남동 532)
- 4. 준공인가의 내역
 - 가. 대지면적 : 32,898.3㎡
 - 나. 연 면 적 : 105,854.36㎡
 - 다.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라.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마. 세 대 수 : 769세대
 - 바. 층 수 : 지하2층 / 지상 15-28층 / 13개동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1019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이 2007. 9. 20.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관련 소규모 공사에 대한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공사품질 향상과 행정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공사계약 추정가격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물품 및 용역 추정가격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 (제7조)
 -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중 수해복구공사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신설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규모의 상한선을 1억 미만에서 2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12. 15(토)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재무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 032-560-4159】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 경리팀 (☎) 032-560-4151로 문의 바랍니다.

조례 정비안 요약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2007.9.20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관련 소규모 공사에 대한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공사품질 향상과 행정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 심의대상 중 공사계약 추정가격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물품 및 용역 추정가격을 5억원에 10억원으로 조정함(제7조)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중 수해복구공사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신설함.(제14조)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규모의 상한선을 1억원미만에서 2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제14조)
개정안	“별 지 참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조”
관계법령 발체	“해 당 없 음”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 사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4조 “1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7조(심의대상) ①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계약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등에 관한 계약으로 한다.</p>	<p>제7조(심의대상) ① _____ _____50억원_____ _____10억원_____ _____.</p>
<p>제1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 (생략) 1.~8. 생략 <u><신 설></u> 10. (종전의 제9호) 생략</p>	<p>제1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10. (종전의 제9호)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10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 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07. 6. 28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함 (안 제30조, 별표 1의2)
-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등록”으로 용어 변경 (안 제33조 제1항, 별표 4)
-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함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 청장(참조 : 녹지경관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182) 및 FAX(560-47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다. 기타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사유	○ '07. 6. 28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함 (안 제30조, 별표 1의2) ○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등록”으로 용어 변경 (안 제33조 제1항, 별표 4) ○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함(별표 5)
개정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 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법령 발취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관련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산수반사항	“해 당 없 음”
기타참고사항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및 영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4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 로 한다.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표4의 제목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3조제1항관련)” 를 “옥외광고업등록수수료(제33조제1관련)” 로 한다.

별표5 의 위반사항 란의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사 항	기 준	과태료
2.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가.30일미만 나.30일이상 90일미만 다.90일이상 180일미만 라.180일이상 1년미만 마.1년이상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별지 제10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30조제1항 관련)

기술능력	시설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 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비 고 : 위 표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중 제2호(신설)

위반사항	과태료
2.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15만원
나. 30일이상 90일미만	40만원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70만원
라. 180일이상 1년미만	130만원
마. 1년이상	240만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옥외광고물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p> <p>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제10호 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1의2] 신설</p>	<p>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2에 의한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33조 (수수료) ① _____ _____ _____ _____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_____ _____ _____.</p> <p>[별표 1의2]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 술 능 력</th> <th style="text-align: center;">시 설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기사 중 1인 이상</td> <td>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td> </tr> </tbody> </table>	기 술 능 력	시 설 기 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기사 중 1인 이상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기 술 능 력	시 설 기 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기사 중 1인 이상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서식 생략)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제33조제1항관련)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제34조제1항관련)		비 고 : 위 표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하는 자이어야 한다. (서식 생략) [별표 4]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 (제33조제1항관련)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제34조제1항관련)	
위반사항	과 태 료	위반사항	과 태 료
1. (생략) 2. (신설)	(생략) (신설)	1.(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 미만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다. 90일 이상180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마. 1년 이상 3. (중전의 제2호) 현행과 같음	15만원 40만원 70만원 130만원 240만원
3. (중전의제2호) 생략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1038 호

인천 서구 개발제한구역 백석집단취락지구 소로3-1일원 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 및 조서열람 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5-48호(2005.04.04)로 지구 지정고시된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집단 취락지구(백석지구)내 소로3-1호선 및 소3-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인천 서구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백석지구) 소로3-1호선일원 도로 개설공사
-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
- 다. 사업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13번지 일원
- 라. 사업 내용 : 도로 L=220m B=6m, L=90m B=4m

2. 열람내용

- 가.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도로내, 도로외 토지 및 동 토지소재 물건 등과 권리일체
-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게재를 생략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보 함)

3. 열람 및 이의 신청

-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7. 11. 30 ~ 2007. 12. 13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4층)
☎ 032)560-4760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열람기간 내 위의 열람 장소에서 서면으로 신청

4. 보상시기 : 2008년 2월중 실시예정 (추후 개별통보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의 총수의